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2-79 (감사관-10215)	신청기관 (부서명)	○○군 (○○○○과)
건명	국비보조사업 내용 변경 후 지방보조사업 지원 가능 여부		

1. 개요

【 국비보조사업 개요 】

- ◇ 위치 : ○○군 ○○리 000-0번지 외 0필지
- ◇ 보조사업자 : ◇◇◇◇◇◇◇◇◇◇(대표 ◇◇◇)
- ◇ 규모 : 공장동 0,000㎡, 창고·사무동 0,000㎡
- ◇ 사업기간 : 0000. 0. 0. ~ 0000. 00. 00.
- ◇ 사업비 : 00억원(국비 00, 군비 00, 자부담 0)
- ◇ 사업목적 : 수입에 의존하는 배합사료 국내산으로 대체하여 생산비 절감 및 어업인 소득증대

2. 신청 사유

- ◇ ○○ 양식장에 공급하기 위한 배합사료 공장 등의 건립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변경된 사업 내용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보조사업자는 국비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금 기술제안 공모사항에 주요 공정별 필수적인 설비가 반영 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장 등의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음.
 - 국비보조사업과는 별개로 「0000년 ○○○ ○○○○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비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된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 국비보조사업(○○○ ○○○○ 공장건립 사업) 실시설계에 반영된 기계설비 구축을 보조사업 내용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기계설비 구축을 도비보조사업(○○○ ○○○○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 도비보조사업 시행 지침에는 보조사업자 모집, 보조금 교부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3. 관련 법령 확인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5조·제35조의2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국비보조사업 내용 변경 후 도비보조사업 지원 가능 여부 : 조건부 가능
-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축하는 건축물 및 기계설비의 기능·형식 등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국비보조사업 내용 변경 후 도비보조사업 지원 가능.
 - 다만, 국비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면 보조금 교부권자(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은 후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중복 지원 여부를 명확히 확인 후 도비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함.
 -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보조금 교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중요재산 현황 작성 시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부기등기하고, 현황을 작성해야 함.
 -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해야 함.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증감액을 명백히 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보조금 교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5. 참고 자료(관련 법령 발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보조금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②~④ (생략)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④ (생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④ (생략)

※ 이 의견서는 업무 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신청한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고, 해당 업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 전라남도의 감사를 받는 자가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훈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함.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